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8월 31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국 토 교 통 부 관 노 형 육

◎대통령령 제3196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승합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승합자동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1년 |
| | 그 밖의 사업용 | 9년 |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충족한”을 “모두 충족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본문 중 “기본차령(제1호 비교에 따라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기간”을 “기본차령 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교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본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 비교 가목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1호 비교 가목에 따른 차령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의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2년(별표 2 제1호 비교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1년)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6개월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 차 종 | 사 업 의 구 分 | 대 상 |
|-----------|--------------|--|
| 승합 자동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인 자동차 및 2010년 9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인 자동차 |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차령기산일이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및 2010년 9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인 자동차 |

제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연장 요건에 관한 적용 특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는 이 영 시행 이후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한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와 국제 추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차령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사업유형에 따라 종전보다 6개월 또는 2년을 늘린 기간으로 하되,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 제처 제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6.>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 차 종 | 사 업 의 구 分 | 차 령 |
|-------|---|--|
| 승용자동차 | 개인택시(경형 · 소형) | 5년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 |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 9년 |
| | 일반택시(경형 · 소형) | 3년 6개월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6년 |
| | 자동차 대여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5년 대형 8년 |
|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6년 대형 10년 |
| 승합자동차 | 플랫폼운송사업용 |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10년 6개월 |
| | 그 밖의 사업용 | 9년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차종 | 사업의 구분 | 대상 |
|-----------|----------------|---|
| 승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 개인택시(경형 · 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 일반택시(경형 · 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

| | | |
|-----------|----------------------|---|
| | |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승합 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2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